

배포 2024. 3. 19.(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3. 20.(수) 06:00

(지면) 2024. 3. 20.(수) 석간

늘봄학교에서도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건강 챙긴다

- 3월 20일(수),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부-4개 민간단체 업무협약 체결
-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위해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상반기 개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사)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독서치료학회, (사)한국연극치료협회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한다.

< 기관별 지원내용 >

기관	지원내용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음악을 활용한 사회정서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사)한국놀이치료학회	학교 적응,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
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 치료 프로그램(초등학생 관계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등)
(사)한국연극치료협회	감정 표현, 관계 맺기 등 연극치료 프로그램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총 4종)

**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관계 인식, 관계 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 발달을 돕는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교육부-4개 민간단체 업무협약 개요
2. 협약단체 소개
3.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책임자	과 장	민혜영 (044-203-6202)
		담당자	연구관	김용준 (044-203-6207)
			주무관	장현창 (044-203-6208)

□ **추진 목적**

- 늘봄학교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부-4개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 **행사 개요**

- (협약 대상) 학생 심리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4개 민간단체
 -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사)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독서치료학회, (사)한국연극치료협회
- (일시) 3월 20일(수), 15:00 ~ 15:30
- (장소) 서울청사 2층(무궁화홀 2실)
- 주요참석자
 - 교육부 : 부총리, 책임교육정책실장,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등
 - 민간단체 : 단체별 대표자 4명
- (협약 주요 내용)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5:00 ~ 15:05(5분)	◦ 개회 및 내빈소개	▶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 ▶사회 :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15:05 ~ 15:08(3분)	◦ 인사말 - 부총리	
15:08 ~ 15:20(12분)	◦ 인사말 - 4개 단체 대표자 4인	
15:20 ~ 15:30(10분)	◦ 협약체결 및 합동 기념촬영	

※ 전체 공개, 세부 일정은 현장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기관명	운영 프로그램	대표자	설립 목적
전국 음악치료사협회	- 교육부 협력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한 초·중·고 심리정서 지원 - 서울·경기·대전 교육청 협력 Wee 클래스 아동대상 심리정서지원	이인용 (협회장)	음악치료 수혜자를 위한 양질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공헌의 실천적 기여를 위해 설립
한국 놀이치료학회	- 학교 적응 프로그램 -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또래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이영애 (이사장)	놀이치료에 관한 연구,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독서 치료학회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 초등학생 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 감정변화가 잦은 초등학생 대상 독서치료	최인자 (학회장)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산하 독서치료 분과 모임에서 어린이문학과 심리학이 결합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동
한국 연극치료협회	- 외로움의 감정 경험하기 프로그램 (초1 대상) - 감정 표현 관계 맺기 프로그램(초2 대상) - 나와 타인의 감정인식하고 이해하기 프로그램(초5 대상) - 협력하여 연극만들기(초6 대상)	한은주 (협회장)	연극치료와 관련된 학술 연구와 치료사 양성, 국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1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 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늘봄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늘봄학교 음악심리치유 및 정서지원 <음악으로 늘 봄처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1.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늘봄학교 음악심리치유 및 정서지원 <음악으로 늘 봄처럼>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 ①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약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늘봄학교 음악심리치유 및 정서지원 <음악으로 늘 봄처럼>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 늘봄학교 음악심리치유 및 정서지원 <음악으로 늘 봄처럼> 교육 활성화 지원
 - ③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장관 **이 주 호**



협회장 **이 인 용**

2 (사)한국놀이치료학회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사)한국놀이치료학회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사단법인 한국놀이치료학회는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
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늘봄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사단법인 한국놀이치료학회는 늘봄학교 늘봄놀이뜰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1.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늘봄학교 늘봄놀이뜰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
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 ①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약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사단법인 한국놀이치료학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늘봄학교 늘봄놀이뜰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 늘봄학교 늘봄놀이뜰 교육 활성화 지원
 - ③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장관 **이 주 호**



이사장 **이 영 애**

3 한국독서치료학회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한국독서치료학회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한국독서치료학회는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 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늘봄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독서치료학회는 늘봄학교 독서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1.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늘봄학교 독서치료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 ①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약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한국독서치료학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늘봄학교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 늘봄학교 독서치료 교육 활성화 지원
 - ③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장관 이 주 호



학회장 최 인 자

4 [사]한국연극치료협회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 (사)한국연극치료협회 업무협약서

교육부와 (사)한국연극치료협회는 늘봄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늘봄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 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자는 늘봄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단, 교육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등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사)한국연극치료협회는 늘봄학교 창의연극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협력사항)

1. 양자는 상호 우호 협력과 늘봄학교 창의연극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 ① 교육부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약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사)한국연극치료협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다음 각 호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늘봄학교 창의연극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 늘봄학교 창의연극 교육 활성화 지원
 - ③ 기타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2. 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양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 1항에 따른 양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 (법적효력)

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 본 협약서 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8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영업상·경영상·기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장관 이 주 호



협회장 한 은 주